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일반형)

위탁자와 수탁자(유안타증권㈜)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늘리고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최초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 수탁자와 합의 하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별표1]의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는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기간이 끝난 후 신탁기간의 연장 또는 신탁금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까지 수익자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 신탁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⑥ 위탁자가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2]의 "특정금전신탁 변경/해지 신청서"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⑦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 만기보다 장기인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시 신탁재산의 환가가 곤란하여 신탁금의 원본 및 수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의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거래에 따른 가격조건의 불리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만기보다 단기인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운용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6 조 (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이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운용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신탁계좌 개설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수탁자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 9 조 (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 11 조 (신탁기본보수) ① 신탁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라 함)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신탁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text{기본보수} = \text{신탁원본평균잔액} \times \text{연 (기본보수율)\%}$$

※ 기본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② 이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부터 제3항에서 기본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수를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신탁선취보수) ① 신탁선취보수(이하 "선취보수"라 함)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text{선취보수} = \text{신탁금액} \times \text{선취보수율(\%)}%$$

※ 선취보수율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말한다.

② 선취보수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탁재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취한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선취보수는 신탁계약기간 중 잔여일수에 비례하여 환급하며, 선취보수 환급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선취보수 환급금액} = \text{납입한 선취보수} - (\text{선취보수} / \text{신탁기간} \times \text{신탁계약유지일수})$$

제 13 조 (신탁수익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수익보수(이하 "수익보수"라 함)를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이 최초 신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신탁원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까지 일부해지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② 수익보수 계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전 영업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신청한 날 이후 1 영업일

③ 기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④ 제 6 항의 수익보수 산정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기준지표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상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⑤ 이하 이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가.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과 기본보수 및 선취보수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 이후 수익보수 계산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탁이익

2.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3. 기준지표수익률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에 대비하여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 상승(또는 하락) 비율을 의미한다.

⑥ 수익보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고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큰 경우

$$\text{수익보수} = \text{신탁원본} \times (\text{신탁수익률} - \text{기준지표수익률}) \times (\text{수익보수율})\%$$

2.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크지 않은 경우 수익보수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 6 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제 14 조 제 1 항에서 정한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수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익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의 이익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된 방식대로 원본에 가산하거나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이익을 지급하거나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또는 가산한다.

② 신탁이익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 15 조 (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 16 조 (중도해지) 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11조에서 정한 신탁기본보수 중 중도해지 시까지의 기본보수, 제13조에서 정한 수익보수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관련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④ 신탁보수를 선취한 경우에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선취보수를 잔여일수에 비례하여 위탁자에게 환급한다.

제 17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2.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3.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 한 때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신탁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또한,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 또는 현금화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제11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의 1/3로 계산한다.

④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 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할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9 조 (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일부해지)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해지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제 22 조 (신탁기간 연장)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연장기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 23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수익자·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4 조 (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25 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및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은 본 신탁계약조항 및 신탁업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 26 조 (투자위험) ①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 등이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 등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기업어음증권 등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제 27 조 (사후관리)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 등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의 교부 또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해당 기업어음증권, 출자전환 주식 등의 교부 또는 현금화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및 추심한다.



제 28 조 (운용지시) 신탁재산 만기일이 신탁계약 만기일보다 늦은 경우 위탁자는 [별표1]또는 [별표2]의 운용지시 세부내용에 당해 신탁재산의 만기일을 기재한다.

제 29 조 (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30 조 (계약의 적용) ①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등 전자금융거래관련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31 조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서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3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1. 제1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2%

※ 보통년은 365일(윤년일 경우 366일) 적용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세부내역] 계약서와 대조하면서 정확히 기재(□에는 V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약내용	근거조항
신탁금액		금 원정 ()	계약서 2조
신탁계약기간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날:	계약서 3조
수익자	원본수익자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성명/법인명:	계약서 4조
	이익수익자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성명/법인명:	
신탁 보수	기본보수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 ()일 미만: 신탁금 평균잔액×연[]%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 ()일 미만: 신탁금 평균잔액×연[]%	계약서 11조
	선취보수	- 신탁금액 × []%	계약서 12조
	수익보수		계약서 13조
신탁이익지급방식		☐ 만기시 일괄지급 ☐ 수시(정기)로 지급 정기지급시기	계약서 14조
중도해지수수료		- 신탁계약일로부터 () 미만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 미만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이상 경과 시 : 해지신탁원본의 ()%	계약서 16조
운용내역 통보여부		☐ 통보를 원함 ☐ 통보를 원하지 않음(생략)	

계좌번호		계약번호	
------	--	------	--

[별표1]

신탁자금 운용방법("V"로 표시함)				
☐ 1.주식	☐ 7.회사채	☐ 13.표지어음	☐ 19.채권형 수익증권	☐ 25. ELS·ELW
☐ 2.국채	☐ 8.기타 채권	☐ 14.보증어음	☐ 20.지수선물	☐ 26.결합파생증권
☐ 3.지방채	☐ 9.전자단기사채	☐ 15.기업어음	☐ 21.지수옵션	☐ 27.옵션계약
☐ 4.통화안정증권	☐ 10.예금	☐ 16.양도성예금증서	☐ 22.국채선물	☐ 28.SWAP
☐ 5.환매조건부채권	☐ 11.콜론	☐ 17.주식형 수익증권	☐ 23.개별주식 옵션	☐ 29.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 6.기타 금융채	☐ 12.발행어음	☐ 18.혼합형 수익증권	☐ 24.기타 선물·옵션	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계법령
				에서 정한 방법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별표2]

유안타증권주식회사 앞. 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운용지시 내용

신탁자금 운용방법(별표1)	
운용지시 세부내용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표3]

지정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관련 발생 수수료	
-----------	--	---------------	--

※자익신탁의 경우, 원본수익자 및 이익수익자는 인감날인 및 서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탁자	주 소: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성명:	(인/서명)
원본수익자	주 소: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성명:	(인/서명)
이익수익자	주 소: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성명:	(인/서명)
수탁자	주 소:		
	유안타증권주식회사	지점장:	(인/서명)

대리인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본인은 상기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대한 제반 절차의 수행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